제2018-4호

#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대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대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자

> 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
>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>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>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>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>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>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>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> 6의3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> 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> 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 소 : 대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
다. 기 간 : 2018. 03. 05. ~ 03. 07.(09:00~16:00) (3일간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사진 1매, **교무실비치**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18. 3. 14. 15:00

나. 선거장소 : 대성초등학교 다목적실
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초등학교 2명, 유치원 1명
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
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8년 3월 12일 ~ 3월 14일 (09:00~16:00) (교무실)

바. 당선자 결정 방법 :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 결정.
다만, 득표수가 같은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18년 3월 5일

대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